

各國 大學圖書館 藏書構成基準의 比較考察

—基準範圍의 模型定立을 위한 比較分析—

孫 正 彪*

目 次	
I. 序 言	III. 各國基準의 比較分析에 의한 結果 및 解釋
II. 各國 藏書構成基準의 現況	1. 最低藏書量의 範圍
1. 美國	2. 年次增加量의 範圍
2. 英國	3. 豫算基準의 範圍
3. 캐나다	IV. 結 論
4. 日本	
5. 韓國	

I. 序 言

오늘날 大學教育의 目的과 機能은 高度의 知的 文化的 繼承·傳達과 創造·發展 및 國家社會의 指導者 養成이라는 傳統的인 目的 이외에 「새로운 大學教育이란 象牙塔을 벗어나서 大學社會와 地域社會와의 紐帶를 強調해야 된다」고 한 A. D. Lindsay의 주장처럼⁽¹⁾ 現實社會의 改造를 위한 當面問題 解決에 直接的으로 도움이 되는 研究와 그 研究를 통한 現實參與라는 또 하나의 目的展開,⁽²⁾ 즉 産學協同體制의 強化로 부터 現實社會를 改造해 보자는 새로운 目的指向의인 方向設定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現實社會에의 適應을 위하여 大學教育의 使命과 方向도 더욱 多邊化, 多樣化하게 되었고 이의 實現化를 위하여 大學은 마침내 data bank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現實에 直面하기에 이르렀다.⁽³⁾ 이처럼 大學教育構造가 時代的인 方向轉換 現象을 자아냄에 따라 大學圖書館도 역시 이러한 現實에 適應하여 그 理念具現과 効率的인 目的遂行을 위하여 “現在 10년이면 3倍의 比率로 增加해 가고 있는 知識의 總量”⁽⁴⁾을 如何한 方法으로 迅速히 分析하고, 綜合하고, 傳達하여 圖書館資料를 통한 教授와 學習, 研究·調査問에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奉仕構造 再體制化

* 慶北大學校 圖書館學科

(1) 高坂正順, 大學의 理念 (東京: 創文社, 1958), pp. 9~21.

(2) 大學教育內容에 關한 綜合的 研究—大學教授 資向上에 關한 研究(서울: 中央教育研究所, 1967), pp. 13~16.

(3) P. F. Drucker, 斷絶의 時代, 韓國能率協會 譯編 (서울: 韓國能率協會, 1971), pp. 455~459.

(4) 香山健一, 未來學, 崔林譯 (서울: 玄岩社, 1971), p. 246.

2 도서관학 논집

의 重大한 局面에 直面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高度化되어 가는 知識領域과 知識總量의 擴大, 要求範圍의 多樣化 및 人的 能力과 豫算의 制限性이라는 現實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藏書構成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根本的인 問題가 오늘날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이 안고 있는 問題中的 하나라 할 것이며 國內外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고 또한 多角的인 方法으로 研究되고 있는 問題라 할 것이다.

本論稿의 意圖도 곧 하나의 法規上으로서건 個人的인 私案으로서건 最低 및 最適 藏書量의 規模에 대하여 國內外에서 提示한 各種 量의 및 豫算的인 基準을 比較檢討하여 오늘날 大學圖書館이 教授·學習 遂行上 必要로 하는 最低基準의 範圍를 究明해 보고자 한데 있다. 그러나 圖書 以外的 資料에 대하여는 거의 大部分 이들을 明示하고 있지 않아 本比較에서는 除外하였음을 밝혀둔다. 물론 이러한 基準을 數量으로 나타낸 不合理性을 指摘한 異論도 비등하다.

Lyle은 “大學圖書館 藏書의 適切性은 數量으로 測定될 수 없다. 藏書를 所藏卷數에 의하여 우열을 判斷한다는 것은 大學을 學生數에 준하여 評價하는 것 처럼 어리석다⁽⁵⁾하고 있고,

McKeon은 “藏書의 數란 그들의 체제이나 무게 이상을 거의 뜻하지 않으며 그것은 適合성과 質에 달려 있다.”⁽⁶⁾는 A. Keogh의 말을 인용 量的基準의 非妥當性을 指摘하고 있다.

또 Downs와 Heussman은 “個個 大學들의 制度的인 環境과 使命이 크게 다르고 一般大學에 適用될 수 있는 基準이 特定機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⁷⁾하고 더불어 “때로는 行政當局者나 調整當局이 最小의 基準을 最大의 基準처럼 고려하게 됨으로서 圖書館의 成長을 阻害할 수 있는 要因이 될 우려성이 있다”⁽⁸⁾ 하고, M. Chicorel은 上記의 意見외에 “大學人口와 知識暴發의 增加로 인하여 수립할 수 없다”⁽⁹⁾는 이유를 더 들고 있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서는 上記의 諸異論들이 모두 妥當性이 있다고는 하지만 大學

(5)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3rd ed. (New York: Wilson, 1961), p. 399.

(6) A. Keogh, “Address at the Dedication of the Sterling Memorial Library at Yale University on 11 April, 1931”, *Yale University Library Gazette*, V(April, 1931), p. 134를 인용한 Newton F. Meckeeon, “The Nature of the College-library Book Collection”, *The Function of the Library in the Modern College*, ed. by Herman H. Fussl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54), p. 48에서 재인용.

(7) R. B. Downs and J. W. Heussman,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1 (January, 1970), p. 28.

(8) 上揭書, 同面: Marrieta Chicorel, “Statistics and Standard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7 (January, 1966), p. 21.

(9) 上揭書, 同面.

교육의 過程, 특히 學生들의 教授-學習過程에 要求될 수 있는 藏書의 構成範圍, 豫算範圍의 決定을 위하여는 하나의 比較의 표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¹⁰⁾ 最終의 評價基準은 아니라 하더라도 敎職員과 學生에게는 重要的 價値指標가 될 수 있으며⁽¹¹⁾ 나아가 基準에 未到達된 大學의 경우 企劃과 豫算과 調整에 關係하고 있는 當局者들에게 影響을 줄 수 있다는 長點도 함께 생각해 볼때 基準設定의 意義 또한 크다고 보아 各國의 基準들을 比較檢討하여 筆者의 小見을 피력하기로 한 것이다.

II. 各國 藏書構成基準의 現況

美國, 英國, 캐나다, 日本, 韓國의 5個國에서 發表된 15個 基準들의 類型을 살펴보면 그 基準設定方法을 學生數, 學科數, 學位課程, 藏書現況, 奉仕負擔率, 敎科目數, 등 基準設定에 反映된 構成要因에 따라 多様な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自體데로 現況을 比較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一目瞭然한 比較를 위하여 基準에 따라서는 40餘個 學科, 5,000名 學生, 大學院生 100名을 가진 大學을 例로 들어 算出 比較해 놓았음을 밝혀둔다.

1. 美國

가. 美國圖書館協會의 量的 評價基準

美國圖書館協會는 1947년에 大學(校) 圖書館 全分野에 걸쳐 奉仕負擔 單位에 따라 最低基準을 提示한 바 있다. 同協會는 利用對象者의 階層에 따라 그들의 要求度에 의한 奉仕負擔量을 分析,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各學部 低級學年生(1,2學年)은 1個單位, 上級學年生(3,4學年)은 2個單位, 各獎學生의 경우는 3個單位, 各大學院生은 4個單位, 各教授에게는 5個單位の 奉仕負擔單位를 부과하고⁽¹²⁾ 이를 基礎로 하여 奉仕負擔額이 첫번 2,000單位와 200,000원 以下の 경우에 대하여는 各單位當 100卷을, 다음번 2,000單位까지는 各單位當 50卷을, 그 다음 2,000單位는 各單位當 30卷을, 單位가 6,000을 超過할 때는 各單位當 10卷을 追加⁽¹³⁾ 하도록 되어 있으며 各單位當 圖書費 豫算은 “첫번 2,000單位는 各

(10) 岩嶽敏生은 學部學生에 專念하여 奉仕하는 學習圖書館의 機能을 부과하는 圖書館에서는 最適藏書量을 생각할 必要가 있다하여 部分肯定을 하고 있다.

○ 岩嶽敏生, “大學圖書館藏書論”, 仙田正雄敎授古稀紀念圖書館資料論集(天理: 同記念會, 1970), pp. 21~22.

○ (11) 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Library Standards Committee, Guide to Canadian University Standards, 1961~64(n. p. n. d), p. 19.

○ (1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lassification and Pay Plans for Libraries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2nd ed., V. 3—Degree—Conferring Institutions (Chicago: A. L. A., 1947), p. viii.

(13) 上掲書, 同面.

4 도서관학 논집

單位當 9弗을, 그 다음 2,000 單位까지는 7弗을, 4,000 單位를 超過할 時는 各 單位當 4弗을”(14) 追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識別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 假想으로 提示한 大學을 例로 들어 算出해 보면, 學部 學生數가 5,000名에 40個學科이므로 文教部 大學行政指針에 따른 獎學生數는 定員의 15%(15) 에서 750名이 되어, 이를 根據로 한 單位數는 低學年과 上級學年數가 半半인 경우 低學年生이 2,125單位, 上級學年生이 4,250 單位, 獎學生이 2,250 單位로 計 8,625 單位가 될 것이다. 이에 의하여 우선 學部學生用 圖書數와 豫算額을 算出해 보면 總 386,250 卷에 50,500弗로 學生 1人當 약 78卷, 10弗이 될 것이다. 또한 大學院生數가 100名이므로 400 單位이며 教授數는 教育法施行令 第 45條 1項(16)과 大學設置基準令 第3條 1項(17)을 根據로 法定定員數를 算出한 結果 234名 以上이 있어야 하므로 最小限 1,170 單位로 計 1,570 單位가 되어 15,700 卷에 6,280弗이 이에 더 追加되게 되어 結局 上記 大學의 基準은 總합 약 400,000 卷에 57,000 餘弗로 學生 1人當 약 80卷, 11.4弗이 될 것이다.

나. 美國의 研究 및 大學圖書館協會의 大學圖書館基準

同協會 基準委員會 (ACRL Standards Committee)는 1959年에 學生數에 의한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어떠한 圖書館도 만일 주의깊게 選定된 圖書로 50,000卷 以下の 藏書를 所藏하고 있다면 教育事業에 効果的인 지원을 期待할 수 없다. …그러나 圖書館 藏書의 增加率은 藏書數가 약 300,000卷에 到達했을 때는 低下될 수 있다.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觀察한 것에 根據를 둔…이 基準은 學生數 600名까지는 50,000卷, 그 다음은 每 20名 增加마다 10,000卷”(18)이 最低基準이라 하여 50,000 卷을 下限線, 300,000卷을 最適線으로 놓고 學生數 600名까지는 1人當 84卷을, 每 200名 超過時마다 1人當 50卷을 부과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基準을 根據로 하여 學生數 5,000名을 가진 上記 大學(假想大學)을 例로 들면 最低量이 270,000 卷으로 學生 1人當 54卷이 配定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豫算規模를 보면 “圖書館 奉仕計劃을 위하여 正常的으로 教育 및 一般豫算 全體의 5%를 必要로 한다. …훌륭한 大學圖書館은 正常的으로 人件費 및 作

(14) 上掲書, 同面

(15) K 大學校의 獎學拮當 實務者에 의한 獎學生數의 %는 法規上에 強制規範으로 되어 있지 않고 文教部 當局에서 大學當局에 行政指針으로 示된 事項이라 한다.

(16) 教育法 施行令 第45條 1項을 보면 “대학교·대학…에는…직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9인 이상 배치하되, …2학과를 초과할 때에는 전기 학과당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하고 있다. (문교비전, 1973년판(서울: 교학사, 1973), p. 61)

(17) 大學設置基準令 第 3條 1項을 보면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명 이하인 경우…5학과인 때에는 39인 이상으로 하고 5학과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매학과 마다 2인 이상씩을 더 한다”하고 있다. (上掲書, p. 838)

(18)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Committee, “大學圖書館을 爲한 基準”, 李炳穆譯, 도현월보, 4권 (1963, 3), p. 26.

業費로서 圖書費의 2倍를 支出하여야 한다”(19) 하여 學校總豫算額에 대한 百分率로 이를 明示하고 있다.

다. Clapp과 Jordan에 의한 基準

Clapp과 Jordan은 1965년에 4年制大學(校) 最低藏書量 規模의 評價公式로 다음 <表 1>과 같이 量的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20)

<表 1> (4年制 大學(校) 最低藏書量 規模 評價公式)

기 본 장 서	도 서		정 기 간 행 문		문 서	합 계
	종 수	권 수	종 수	권 수	권 수	권 수
1. 학부도서관 이하 제한의 각각에 대한 추가량	35,000	42,000	250	3,750	5,000	50,750
2. 교수수 (진입)	50	60	1	15	25	100
3. 학생(학부, 대학원)		10		1	1	12
4. 학부—장학생, 자율학습생	10	12				12
5. 학부—진공주제분야	200	240	3	45	50	335
6. 대학원—석사과정	2,000	2,400	10	150	500	3,050
7. 대학원—박사과정	15,000	18,000	100	1,500	5,000	24,500

이 公式은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目錄으로 認定되고 있는 Shaw, Lamont, Michigan, California 目錄을 調査한 結果 나타난 35,000 種을 基本藏書로 擇하고(21) 이에 各 奉仕對象의 階層에 따라 一定量을 追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學部學生의 경우는 2,115名을 基準으로 하여 그 2倍가 될 경우 3項처럼 10卷을 追加하도록 하고 있다.(22) 이 公式에 의하여 上記의 大學을 例로 算出해 보면 學部圖書館 基本圖書가 35,000種에 42,000卷, 獎學生을 除外한 追加學生用 圖書가 21,350卷, 4項에 속한 學生 750名에 대한 것이 7,500種에 9,000卷, 40個學科 學部專攻分野의 것이 8,000種에 9,600 卷으로 合計 50,500 種에 81,950 卷으로 결국 學部學生의 경우 1人當 約 10種 16卷이 最低藏書基準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이에 追加될 것으로는 教授234名에 대한 것이 11,700 種에 14,040卷, 大學院 碩博士課程이 17,000種에 20,400 卷으로 總計는 79,200種에 約 120,000卷이 되어 學生 1人當 約 16種, 24卷이 될 것이다.

(19) 上揭書, pp. 23~24.

(20) Verner W. Clapp and R. T. Jordan, "Q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Academic Library Collec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6 (September, 1965) p. 374.

(21) 上揭書, p. 375.

(22) 上揭書, pp. 375~376.

6 도서관학 논집

라. Downs와 Heussman의 藏書現況에 의한 基準

이는 大學校圖書館 基準을 開發하고자 그 基礎作業으로 Robert B. Downs를 委員長으로 한 美國의 研究圖書館協會와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會가 結成한 大學校 圖書館 基準 共同委員會 (ARL-ACRL Joint Committee on University Library Standards)에 의하여 美國과 캐나다의 50個 大學校圖書館의 現況을 調査·分析하여 우수한 大學校圖書館에 대한 基準으로 提案한 報告이다.⁽²³⁾ 이에 대하여 Downs와 Heussman은 “一般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大學校圖書館의 基準의 必要性이 오래동안 認識”되어 왔으면서 “機關(大學校 및 附屬機關)들의 多樣性 때문에” 거의 進歩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²⁴⁾ “어느 大學校 圖書館도 財政의 支援과 多樣한 形態의 資料...와 같은 이러한 基礎(大學校圖書館의 現況)에서 위에 選擇된 50個校와 그 自體를 比較”⁽²⁵⁾하여 自館의 豫算分配나 藏書의 規模를 決定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의 現況 比較를 要約해 보면 <表 2>와 같다.⁽²⁶⁾

<表 2> (美國과 캐나다 大學校圖書館 現況)

1968년 6월 말 現 狀	도서 관수	합 계	평 균	하 위	1 위	중 간 층	3 위	상 위
학 생 수	50	99,470	19,895	4,719	11,840	16,775	28,369	48,285
장 서 수	50	99,459,415	1,989,188	890,666	1,164,142	1,456,684	2,103,723	7,920,387
학생 1인당	50		99.99	30.35	60.07	83.56	143.76	665.29
장서 증가 총수 (3년간 평균)	46	4,767,687	103,645	37,268	69,001	79,867	130,523	254,311
장서 순증가수 (3년간 평균)	49	4,566,297	93,190	11,182	64,296	75,652	119,773	251,540
학생 1인당 장서 연간 순증가수	49		4.7	2.4	5.4	4.5	4.2	5.2
도서 정기 간행물 제본비 (학생 1인당)	50		47.94	20.39	35.40	46.61	70.13	224.54

이 표에 의하면 50個 大學校의 調査結果 學生 1人當 平均은 99.99卷, 中間이 83.56卷, 學生 1人當 增加冊數는 平均이 약 4.7卷, 中間이 약 4.5 卷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3) David R. Watkins,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Trends, vol.21, no.2 (October, 1972), p.194.

(24) Downs and Heussman, 前掲書, p.28.

(25) 上掲書, p.35.

(26) 上掲書, p.30.

學生 1人當 豫算額 (定期刊行物, 製本費 包含)은 平均이 47.94弗, 中間이 46.61 弗로 되어 있다. 이러한 調查結果의 分析에 基礎하이 그 報告書는 大學校圖書館의 우수성 判斷을 위한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提議하고 있다. 즉, 總藏書數 200,000卷 (學生 1人當 100卷), 純年次增加量 100,000卷 (學生 1人當 5卷), 定期刊行物 15,000種 (學生 1人當 1種), 圖書館 總豫算額은 學校 總豫算額의 5%, 그 中 圖書費는 圖書館 總豫算額의 34%, 學生 1人當 圖書費 豫算額은 50弗을 提議하고 있다. (27)

마. Massman 과 Patterson 에 의한 年間 最低豫算基準

그들에 의하면 “書籍出版 狀況과 教科課程 등 여러 現實的인 問題”(28)를 基礎로 하여 年間 圖書費 豫算의 最低基準을 算出해 온 結果 總 60個 主題分野에 3,195種(29)이 大學 (學部)에 必要한 最低基準으로 이의 豫算額으로는 26,178.69 弗이 支出되어야 하며 逐次刊行物의 購入을 위하여는 最小限도 3,250 弗이 必要하다 하고 있다. (30) (31) 이에 의하면 1主題分野當 약 53種, 436 弗이 學部를 위한 年間最低基準이라 할 것이다.

2. 英國

가. 英國圖書館協會의 學位課程에 의한 基準

英國의 大學圖書館基準은 1964년에 英國圖書館協會 工科大学 및 高等教育課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學位課程과 專門課程을 基礎로 하여 學位課程이 없는 大學은 藏書가 적어도 10,000種 以上이어야 하고, 약간의 學位와 專門的인 高級課程 (specialized advanced courses)이 있는 中 큰 大學은 15,000種 以上の 圖書가 必要하며, 많은 學位課程을 가진 큰 大學에 있어서는 이 數字는 훨씬 증가되어야 한다. (32)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定期刊行物數에 있어서는 高等教育課程만 있는 小規模 大學의 경우 100種 에서 專門的인 高級課程을 가지고 있는 大學의 경우 最小 600種의 定期刊行物을 備置하여야 한다 하고 圖書館 總豫算額은 學校 總豫算額의 約 4%를 策定하고 있다. (33) 이 基準은 그 設定方法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는 있지 않지만 어떠한 小規模 大學圖書館이라도 效果의으로 學校教育을 支援하기 위하여는 10,000~15,000 種이 最低量이라 하고 있다. 이를 美國의 ACRIL 에서 제시한 50,000 卷과 比較하면 複本가

(27) Watkins, 前掲書, p.196.

(28) Vergil F. Massman and K. Patterson, "A Minimum Budget for Current Acquisition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1 (March, 1970), p.86.

(29) 上掲書, pp.87~88.

(30) 上掲書, p.85.

(31) 이의 附제에 添애 가운데는 주간자료의 보충구입, 정기간행물, 신문, 채제물, 시청각자료, 정부간행물, 소선, 대치도시, 복본 혹은 향토자료등의 구입비용은 고려치 않았다 하고 있다.

(32)(33) "Library Association Recommends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Library Journal, vol.89, no.20 (November 15, 1964), pp.4492~4493.

8 도서관학 논집

지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조금 낮게 策定된 基準이라 하겠다.

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의 大學校圖書館 基準

이 基準은 1963년에 大學校認可委員會 (University Grants Committee)에 의하여 結成된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 (Standing Conference of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同會議는 大學校認可委員會의 圖書館部委員會 (Committee on Libraries of 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의 質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

3,000名の 學部學生, 1,000名の 研究生, 500名の 教授陣을 가진 大學校는 500,000卷과 每年 16,000卷의 年次增加量 및 定期刊行物 豫約數는 3,000種, 圖書館豫算은 學校 總豫算의 6%, 圖書 및 定期刊行物費와 製本費는 圖書館豫算의 50%를 차지 하여야 하며 새로이 設立된 大學校는 最低 100,000卷의 藏書量을 갖추어야 한다.⁽³⁴⁾ 하여 既存大學校의 경우와 新設大學校의 경우를 나누어 明文化 하고 있다. 이 基準에 明示된 藏書量을 學生 1人當 卷數로 나타내 보면 既存大學校는 1人當 125卷, 新設大學校는 1人當 25卷 程度, 年次增加量은 1人當 4卷으로, 學生 1人當 藏書數와 圖書費 및 圖書館豫算額은 本論稿에서 提示된 어떤 基準보다도 높은 樣相을 보여 주고 있으며 年次增加量은 Downs와 Heussman에 의하여 提示된 것보다 1卷 程度 낮게 되어 있다.

다. 英國圖書館協會의 師範大學基準

이 基準은 英國圖書館協會 大學校 및 研究圖書館部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基準을 보면 效率的인 最低藏書量의 下限線으로는 中央圖書館에 20,000卷, 學校奉仕部에 7,500卷을 잡고, 學生 1人當으로는 500名 以上の 大學은 最低 60卷, 그 以下の 大學은 最低 75卷을 配定하고 있다. 또한 2年동안에 갖추어야 될 總藏書量은 學生數 500名까지는 39,000卷, 750名까지는 54,750卷, 1,000名까지는 70,250卷으로 成長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다.⁽³⁵⁾ 이 基準을 보면 下限線의 경우는 ACRL 보다 낮게 되어 있으며 英國圖書館協會의 學位課程에 의한 기준과는 大同小異하나 學生 1人當의 경우는 ACRL 보다 높게 되어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에서 提示한 大學校圖書館 基準은 1965년에 캐나다 大學(校) 圖書館協會 大學校圖書館 基準委員會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大學校圖書館 藏書의 規模는 비록 最

(34) K. W. Humphreys, "Standards in University Libraries", *Libri*, v. 20, no. 1~2(1970), p. 146;

_____, "Standards for Libraries in Great Britain", *Library Trends*, v. 21, no. 2 (October, 1972), p. 320.

(35) Humphreys, *Library Trends*, 前掲書, p. 322.

終의 評價基準은 아니라 하더라도 敎職員과 學生에게는 重要한 價値指標⁽³⁶⁾ 라 하여 學生數에 의하여 이를 算出해 놓고 있다. 즉, 大學校圖書館은 “100,000 卷의 藏書가 最小의 必要한 量이며 正規 學生 1人當 75권 以上이 될때까지는 大學院學生當 200卷이 이에 追加되어야 한다”⁽³⁷⁾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最低藏書量의 경우는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에서 提示한 基準과 같지만 最適藏書量의 경우는 學生 1人當 75卷 以上이므로 英國의 125卷에 比하던 相當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으며 1947년에 ALA 에서 提示한 奉仕負擔率에 의한 基準을 根據로 하여 算出해 본 學生 1人當 78 卷과는 거의 비슷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4. 日 本

日本에서 提示된 基準으로는 文部省令으로 公布된 基準과 國·公·私立大學 改善要項에 明示된 基準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大學設置基準의 學科別 基準

日本은 우리나라의 基準과 마찬가지로 1957年 10月 22日 文部省令 第 28號로 公布된 大學設置基準 第 40條에 이를 明記하고 있다.

이의 內容을 보면 一般敎育科目에 관한 圖書는 各 科目當 1,000冊 以上, 外國語科目에 관한 圖書는 한 外國語에 대하여 1,000冊 以上, 保健體育 科目에 관한 圖書는

<表 3> (日本 大學圖書館 藏書基準現況)

학 부 명	도 서 수	둘 이상의 학과로 조직된 경우 한과 당 책수	학술 잡지 종류수
문 학 부	8,000 이상	2,000 이상	30 이상
법 학 부	10,000 "	5,000 "	50 "
경 제 학 부	10,000 "	5,000 "	50 "
상 학 부	10,000 "	5,000 "	50 "
이 학 부	8,000 "	2,000 "	50 "
공 학 부	8,000 "	2,000 "	50 "
농 학 부	8,000 "	2,000 "	50 "
약학에 관한 학부	4,000 "	2,000 "	30 "
가정에 관한 학부	5,000 "	1,500 "	20 "
미술에 관한 학부	5,000 "	1,500 "	20 "
음악에 관한 학부	5,000 "	1,500 "	20 "
체육에 관한 학부	5,000 "	2,000 "	20 "

(36) 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前掲書, p.16.

(37) 上掲書, 同面.

300冊以上, 專門敎育科目에 관한 圖書 및 雜誌는 앞의 <表 3>과 같은 冊을 갖추도록 하여⁽³⁸⁾ 一般敎養科目과 專攻科目으로 나누고 專攻科目의 경우는 다시 學部 및 學科의 類型에 따라 藏書量을 配定하고 있다.

이 基準에 의하면 學生數의 幅에는 關係없이 대체로 30~35個 學科로 構成되고 上記 表의 諸學部를 가지고 있는 綜合大學校의 경우는 100,000 餘卷이 最低基準으로 되어 있어 英國의 新設大學校 最低基準이나 캐나다의 大學校 最低基準과 同一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나. 國·公·私立大學 改善要項의 學生數에 의한 基準

1953년 1월 日本 文部省에 設置된 國立大學圖書館 改善研究會와 1961년 11월 公立大學圖書館 協議會에서 제시한 日本 國·公立大學圖書館 改善要項과 1956년 5월에 私立大學圖書館協會에서 제시한 私立大學圖書館 改善要項을 보면 다음과 같이 最低基準을 제시하고 있다.

國·公立大學은 4年制 新設大學의 경우 學生 1,000 名까지 人文系 50,000冊, 自然系 30,000冊을 最低基準으로 하고 學生이 1,000名을 넘을 경우는 人文系 10,000冊, 自然系 5,000冊을 이에 加算하며 年增加冊數는 學生 1人當 2冊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하고,⁽³⁹⁾ 私立大學은 最低數를 學生數 1,000名 程度 1人當 50冊, 5,000名 1人當 40冊 10,000名 1人當 35冊을 配定하고 있다. 또 年增加冊數는 最低基準冊數에 대하여 1,000名 까지 年 5%, 1,000名 以上은 年 3~4%로 하여⁽⁴⁰⁾ 이들 모두 學生數에 의한 基準을 採擇하고 있다.

이 두基準을 比較해 보면 學生數 1,000名까지는 거의 差異가 없으나 學生數가 1,000名을 넘을 경우는 顯格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5,000名の 學生數를 가진 大學을 比較해 보면 國·公立大學의 경우는 100,000卷 程度로 대체로 文部省令으로 公布된 「大學設置基準」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私立大學의 경우는 200,000卷이 最低基準으로 2倍 以上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年次增加量의 경우는 學生數 1,000名까지는 私立大學基準이 25% 以上 높게 策定 되어 있으나 1,000名을 넘을 경우는 國·公立大學이 더 높게 規定되어 있다. 5,000名 學生數를 가진 大學을 比較해 보면 國·公立大學의 年次增加量은 10,000冊이지만 私立大學은 6,000~8,000冊으로 40~20%가 낮게 配定되어 있는 셈이 된다.

5. 韓 國

韓國에서 提示된 基準으로는 大統領令으로 公布된 「大學設置基準令」과 「韓國圖書館協會에서 制定한 「大學圖書館施設基準(案)」, 그리고 筆者에 의하여 提示된 「대학도시

◎(38) 文部法令要覽, 1962年度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1962), p. 116.

◎(39)(40) 圖書館關係法規基準集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2), pp. 43~54.

관 기본장서구상 기준(안)]을 들 수 있다.

가. 大學設置基準令의 藏書構成基準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本藏書構成基準은 1955年 8月 4日 大統領令으로 公布되어 1965年, 1969年, 1970年에 걸쳐 改正을 본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3項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大學設置基準令(改正 1970年 1月 27日 大統領令 第4543號) 第11條 3項을 보면 “圖書는 學生 1人에 대하여 30卷 以上으로 하되, 學科當 5,000卷 以上과 學術雜誌 5種 以上을 備置할 것, 다만 初級大學(醫豫科를 包含한다)과 教育大學에 있어서는 자기 $\frac{2}{3}$ 로 한다”(41) 하였다. 더불어 未達된 大學들의 年度別 補充을 위한 當爲規範으로 同令 附則 第2項(42)의 規定에 의하여 1970年 1月 7日 文教部令으로 大學施設 年度別 補充基準令을 發表하였다. 同 補充基準令 第3條에 의하면 1973年末까지 100% 完備하도록 하여 基本藏書의 規模를 學生數와 學科數에 의하여 策定하였으며 나아가 이의 目標達成을 위한 期間을 強制規範으로 設定해 놓고 있다.

이 基準은 다른 基準에 비해 낮게 規定된 느낌이 있지만 國內 大學의 歷史와 學校經營을 위한 財政的인 면으로 보아 大學의 歷史가 길고, GNP가 높고, 出版量이 많은 先進國과 比較해 본다면 극히 現實的이라 볼 수 있으며, 學科別 基準의 경우는 日本의 基準(學科當 2,000~3,000卷)보다 오히려 높은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나. 韓國圖書館協會의 大學圖書館施設基準(案)과 修正案

이 基準案은 現行基準에 대한 修正案으로 文教部에 提出키 위하여 1964年에 制定한 것이다. 이를 보면 文教部에 提出되기 前의 草案은 “1人當 30卷으로 하되 人文系 學科當 4,000種, 理工系 學科當 3,000種, 藝能系 學科當 1,500種, 初級大學은 4年制 大學의 $\frac{2}{3}$ ”(43)라 하였다. 이 案은 다시 圖書館界 實務者 會議에 의하여 修正되어 文教部에 提出되었는데 修正案으로 採擇된 것을 보면 學科當 配定에 있어, “人文系 2,000種, 理工系 1,500種, 藝能系 1,000種, 初級大學은 4年制 大學의 $\frac{1}{2}$ ”로 規定하고 있다.(44)

이 두基準案은 공히 現行 基準令의 學科當 基準이 卷數로 되어 있기 때문에 複本까지 포함시킬 우리도 있는 關係로 矛盾性을 除去하기 위하여 種數로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草案보다 修正案으로 採擇된 基準이 더 낮은 것은 우리나라 大學과 出版量의 現實情을 고려하여 수립한 方案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 修正案에 의하여 40餘個 學科 5,000餘名을 가진 大學을 基準으로 算出해 보면 적어도 75,000餘種에 150,000餘卷 以上으로, 즉 1人當 15種, 30卷 以上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1) 문교비전, 1970년판(서울:교학사, 1970), p. 842.

(42) 上揭書, p. 843.

(43) 한국도서관학회 편, 한국도서관통계, 1973년도. (서울:동원회, 1973), p. 116.

(44) 上揭書, 同面.

12 도서관학 논집

다. 孫正彪에 의한 大學圖書館 基本藏書構成 基準案

이는 筆者에 의하여 提示된 私案으로 그간 여러분들에 의하여 指摘된 바와 같이 現行 基準令이 量的 基準만을 設定해 놓음으로써 現實적으로 惹起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들과⁽⁴⁵⁾ 基準設定方法의 矛盾點⁽⁴⁶⁾들을 다소나마 解決하고 보다 經濟적이고 合理的인 藏書構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教科科目과 學生數에 의한 基本藏書量 基準과 그것을 基礎로 한 年次增加量 基準 및 豫算基準의 理論적인 模型을 定立해 본 것이다. 法的, 經濟的 側面에서 본 現況과 現行 教科課程과 關聯하여 定立된 模型에 의하여 算出해 본 結果,⁽⁴⁷⁾

1) 大學教育 수행상 없어서는 안 될 基本藏書량의 最低基準은 單科大學의 경우 教科科目當 40種 以上, 綜合大學의 경우 教科科目當 20種 以上을, 學生 1人當의 경우 總學生數가 總學科數의 120倍일 때는 1人當 20卷 以上, 120倍 以上이거나 以下일 때는 倍로 增減할 때마다 이에 比例하도록 하고,

2) 最低 基本藏書량을 갖춘 후의 年次增加量の 基準은 單科大學의 경우 教科科目當 2.77種 以上, 綜合大學의 경우 教科科目當 1.4種 以上을, 學生 1人當의 경우 1項과 같은 基準에 의거하여 120倍인 경우 1.4卷 以上을, 120倍 以上이거나 以下일 때는 倍로 增減할 때마다 이에 比例하도록 하여야 하며,

3) 이들을 基礎로 한 年次豫算規模는 學校 總豫算額의 3.5% 以上을 資料購入費로 策定하도록 나타나고 있다.⁽⁴⁸⁾

Ⅲ. 名國基準의 比較分析에 의한 結果 및 解釋

以上과 같이 要約해 본 各國基準들의 現況을 基準設定方法의 共通分母를 찾아 3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最低藏書量の 範圍

各國基準들의 最低藏書량을 보면, 新設大學의 경우는 대체로 綜合大學의 경우 100,000卷 程度가 最低基準의 下限線으로 나타나고 있다.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와 캐나다는 이를 新設大學의 最低基準으로 規定化하여 既存大學과 區別해 놓았고, 日本의 大學設置基準은 그러한 規定化는 아니지만 30~35個 學科를 가진 경우를

(45) 李春熙, "大學圖書館," 전국도서관 실태조사, 상(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 149;

(46) 장인제, "1960年の 大學圖書館," 도서관월보 1권(1960, 12), pp. 5~6.

(47) 現行 基準令의 問題點과 基準設定方法의 問題點에 대하여는 孫正彪, 대학도서관 기본장서 구성기준에 관한 연구(未刊本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pp. 39~55 참조.

(48) 上揭書, pp. 140~141.

換算한 結果 100,000卷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日本 國公立大學 改善要項도 新設大學의 경우 1,000名까지는 人文系 50,000卷, 自然系 30,000卷을 最低基準으로 하고 1,000名이 超過할 때마다 人文系 10,000卷, 自然系 5,000卷씩을 이에 追加하도록 하여 綜合大學이라면 上記의 下限線과 비슷한 樣相이라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筆者의 基準 역시 5,000名 學生數를 가진 大學校가 102,000卷으로 나타나 綜合大學이라면 대체로 100,000卷 内外로 나타나고 있고 Clapp과 Jordan도 學生數 2,000名까지는 100,000卷, 5,000名은 120,000卷을 提示하여 下限線으로는 비슷한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한편 單科大學의 경우를 보면 ACRL은 50,000卷을 下限線으로 提示하고 있고 英國 圖書館協會의 師範大學基準은 30,000卷을, 學位課程에 의한 基準은 10,000~15,000種을 提示하여 複本數까지 包含시킨다면 30,000卷 内外라 할 수 있다. 또 日本 私立大學 改善要項은 1,000名 程度는 1人當 50冊이라 하여 역시 50,000卷 程度를, 日本 國公立大學 改善要項은 1,000名까지 人文系 50,000冊 自然系 30,000冊을 提示하고 있어 單科大學의 下限線으로는 奉仕對象者數에 따라 약간의 差는 있겠지만 대체로 40,000卷 内外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下限線의 경우는 大同小異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學生 1人當의 基準을 보면 相當한 差를 보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LA는 學部學生用 圖書는 1人當 78卷, 大學院生과 教授를 포함한 것은 1人當 약 80卷을 最低基準으로 提示하고, ACRL은 學生數 600名까지는 1人當 84卷, 600名이 넘을 때는 1人當 54卷을 策定하고, 英國圖書館協會의 師範大學基準은 500名 以下는 1人當 75卷, 500名 以上은 60卷을 策定해 놓고 있다. 그리고 Downs와 Heussman은 100卷을,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는 125卷, 캐나다는 75卷을 제시하고 있다. 反面에 日本 私立大學 改善要項은 1,000名 程度 1人當 50卷, 5,000名 程度 40卷, 10,000名 程度 35卷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大學設置基準令은 1人當 30卷 學科當 5,000卷을, 韓國圖書館協會 修正案은 1人當 30卷, 學科當 人文系 2,000種, 理工系 1,500種, 藝能系 1,000種을 提示하고 있어 最低 30卷에서 最高 125卷에 이르는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各國의 文化指標와 經濟指標 및 基準設定에 反映된 奉仕對象 階層의 要求幅등의 差로 인하여 多樣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ALA, Clapp과 Jordan, 및 筆者의 基準을 除外하고 國內外를 막론하고 文獻上으로는 그러한 基準設定에 대한 具體的인 根據가 提示되어 있지 않고 結果만이 밝혀져 있어 一目瞭然하게 比較檢討하기란 容易하지 않다 하겠다.

따라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Danton의 理論을 基礎로 하여 基準模型을 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14 도서관학 논집

Danton은 藏書構成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5段階로 나누어 놓고 있다.

最低의 段階는 minimal collection—이는 가장 基本的이고 初步的인 情報만을 選擇한 藏書構成이다.

2段階는 working collection—이는 적어도 大學院生이나 教授의 豫備的인 調査를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3段階는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이는 收集段階에서 始作되는 本格的인 研究의 支援를 위한 것이다.

4段階는 comprehensive collection—이는 많은 研究를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5段階는 true completeness—이는 研究的 價値가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긴 나쁜 것이긴 全部 收集하는 것이다. 이 段階는 특히 아주 少數의 分野에 관한 完全한 集成을 意味한다 하여 5段階로 나누어 說明한 후, (49) 大學圖書館으로서는 博士課程을 가진 分野에 대하여는 적어도 working collection의 水準을 維持하고, 그 중 많은 分野에 대하여는 comprehensive collection의 段階를 指向하여야 한 것이라 主張하고 있다. (50)

이 理論에 의하여 上記한 基準들을 分類하면 대체로 다음의 2가지 類型으로 그 模型을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면의 下限線으로 提示된 新設 綜合大學 100,000卷 内外와 單科大學 40,000卷 内外의 基準들은 가장 基礎的이고 初步的인 情報提供에 主眼點을 둔 minimal collection의 基準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新設大學이라면 大部分 本格的인 研究活動을 위한 研究陣의 結成이나 碩博士課程의 積極的인 活動展開 보다는 學部學生을 위한 教授—學習課程의 整備가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1段의 藏書基準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英國과 캐나다가 新設大學과 既存大學의 基準를 區別한 點이라든지 ACRL이 “어떠한 圖書館도……50,000卷 以下の 藏書를 所藏하고 있다면 教育事業에 效果的인 支援를 期待할 수 없다” (51)고 한 點, 日本 國公立大學 改善要項이 教授와 大學院生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點, (52) 등 이외에도, 學部學生만을 위한 基準으로 提示된 Harvard 大學의 10萬卷, (53) 日本의 5萬卷, (54) Michigan 大學의 125,000

(49)(50) Periam J. 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p. 112~115.

(51) ACRL, *Standard Committee*, 前前書, p. 26.

(52) *圖書館關係法規基準集*, p. 45.

(53) Keyes D. Metcalf, *The Ever Expanding Demand for Materials and the Threatened Decline of Support Changing Patterns of Scholarship and Future of Research Libraries* (1951), p. 34; 이 大學의 1962年度 學生數는 4,737名이다 (A. M. Cartter, ed., *American Universities and Colleges*, 9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64)

(54) 文部省 大學學術局 情報圖書館課, *大學圖書館施設計劃要項(答申) 第3部 昭41-* 引用한 岩嶽敏生, 前揭書, p. 23에서 再引用.

~150,000卷,⁽⁵⁵⁾ Clapp과 Jordan의 42,000卷,⁽⁵⁶⁾ 筆者가 提示한 70,000卷⁽⁵⁷⁾ 등의 基準을 學生 1人當 基準으로 換算하여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째번의 學生 1人當에 의한 基準은 大部分 working collection이나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을 위한 基準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의 125卷과 Downs와 Heussman의 100卷의 基準은 그 基準設定의 經緯로 보아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을 위한 基準으로 提示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英國의 경우를 보면 上記의 基準充足을 위한 豫算基準의 決定要因으로 ① 大學校에서 教授 및 研究를 移行해 나가기 위한 主題數와 主題部分, ② 各 主題分野의 研究의 깊이와 教授陣 사이의 關心의 範圍등을 이에 包含시키고 있으며,⁽⁵⁸⁾ 美國의 경우도 역시 基準設定에 있어 “教科課程과 研究프로그램에 關聯된……基準이 必要視된다”⁽⁵⁹⁾는 前提 아래 “우수大學校 圖書館 判斷基準”⁽⁶⁰⁾으로 提議된 點등으로 보아 그러하다 하겠다. 이에 반하여 캐나다의 75卷, ALA의 78卷과 80卷, ACRL의 54卷과 (84卷, 英國圖書館協會의 師範大學基準의 75卷과 60卷 등의 基準은 working collection을 위한 基準으로 提示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ACRL의 경우를 보면 藏書規模의 主要決定要素로 ① 教科課程의 範圍와 特性, ② 大學院課程의 數와 特性, ③ 教授方法, ④ 學部 및 大學院生의 規模, ⑤ 보다 專門的인 資料에 대한 敎職員의 要求(이는 特定分野에서의 研究圖書館의 活用을 위한 充分한 資料를 意味하지 않음)등 5가지를 들고 있고,⁽⁶¹⁾ ALA는 學部學生을 위한 敎授學習資料로 78卷을 配定하고 있다는 點 III-1-(1)가 參照), 캐나다는 學生 1人當 75卷이 될때까지는 大學院生當 200卷을 이에 追加하도록 한 點(III-1-(3) 參照) 등으로 보아 2段階를 위한 基準으로 提示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設置基準令의 1人當 30卷과 日本 私立大學 改善要項의 1人當 35~50冊의 경우는 working collection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上記한 minimal collection에 가까운 基準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岩嶺敏生은 “日本의 現行 各種 大學圖書館 改善要項에 規定된 藏書量 基準은 學部學生用 學習圖書館에 대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研究圖書館을 위하여는 어떤 意味도 지니고 있지 않다”⁽⁶²⁾하고 있다. 이 말은 곧 研究 調査活動에 기여할 수 있는 圖書館이 되려면 이

(55) アメリカ圖書館研究調査團, アメリカの圖書館, 1950, p.41을 引用한 上掲書, 同面에서 再引用: 1932年度 學部學生數는 19,551名이다(Carter, 前掲書)

(56) 이는 學生數 2,115名을 基準으로 한 數이다(Clapp and Jordan, 前掲書, p.375)

(57) 이는 學部學生 5,000名을 對象으로 定立한 것이다(崔達鉉, 孫正彰, “圖書館利用 頻度 分析에 의한 學生利用 圖書館測定에 관한 研究”, 文理學叢, 3(1975), p.75.)

(58) Humphreys, 前掲書, p.319.

(59) Watkins, 前掲書, p.190.

(60) 上掲書, p.196.

(61) Helen M. Brown, “College Library Standards”, Library Trends, v.21, no.2(October, 1972), p.212.

(62) 岩嶺敏生, 前掲書, p.24.

보다 훨씬 많은 藏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는 우리나라의 基準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다. 물론 教育의 經濟的 指標라 할 수 있는 國民所得이나 文化的 指標라 할 수 있는 出版水準의 면에서 觀察해 본다면⁽⁶³⁾ 결코 낮은 基準은 아니라 推測되지만 法定期間을 볼때 大學設立後 5年 以內에 갖추도록 한 點으로 보아 minimal collection을 위한 基準으로 提示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各國 基準들의 樣相을 보면 基準設定에 適用시킨 諸要素들의 範圍에 따라 相異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이들을 綜合하여 그 範圍를 살피 본다면 대체로 新設 綜合大學의 경우 minimal collection으로는 100,000卷 内外로 學生 1人當 20~30卷 程度, 單科大學은 40,000卷 内外로 1人當 40卷 程度, 2段階인 working collection으로는 綜合大學의 경우 1人當 最低 70~80卷, 單科大學은 50~60卷 程度,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의 경우는 1人當 最低 100卷 以上の 3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添言하고 싶은 것은 英國이나 美國, 캐나다의 基準처럼 研究 調查活動의 積極的인 支援까지를 包含시킨 基準設定이 必要한가 하는 點이다. 물론 이들이 最終의 評價基準은 아니라 하더라도 大學教育의 目的遂行에 필요시 되는 藏書 構成範圍의 決定을 위하여는 比較의 標準이 되는 主要한 價值指標가 될 뿐 아니라 基準에 未達된 大學의 경우에는 當局者들의 企劃과 豫算 및 調整에 있어 參考指標가 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最低의 基準으로 提示되고 있다 하더라도 Downs와 Heussman의 말처럼 “行政當局者나 調整當局이 最小의 基準을 最大의 基準처럼 考慮하게 됨으로써 圖書館의 成長을 阻害할 수 있는 要因이 될 우려성”도 있을 뿐 아니라,⁽⁶⁴⁾ 한 論文에서도指摘한 바처럼 研究圖書館에 대한 量的 問題란 研究 主題 分野의 多樣성과 이에 필요시 되는 資料範圍의 無限性, 多樣性 때문에 그 基準의 範圍限界를 決定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여겨진다.⁽⁶⁵⁾

따라서 筆者의 見解로서는 大學教育의 過程, 특히 學生들의 教授-學習課程에 主眼點을 둔 minimal collection의 基準設定으로 그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積極的인 研究活動을 위한 基準段階는 하나의 參考指標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年次增加量의 範圍

本論稿에서 比較된 各國基準 가운데 年次增加量의 基準이 제시된 것은 15個 基準中 不過 6個 基準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들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63) 1967年度 主要國 圖書出版 種數를 比較해 보면 美國 58,877種, 英國 29,564種, 日本 30,451種인 반면 國內圖書는 2,216種이 發行되었다. (出版白書, 1970年 12月(서울: 大韓出版文化協會, 1970), p. 13)

(64) 註 7에서 再引用.

(65) 岩猿敏生, 前掲書, pp. 23~26.

Downs와 Heussman에 의한 基準은 5卷,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 基準은 4卷을 제시하여 上記한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에 대한 年次增加量으로 제시하고 있고, Massman과 Patterson은 이와는 달리 現刊 資料購入을 위한 最低基準으로 主題別에 다른 種數로 나타내어 總 60個 主題에 3,195種(1主題當 53種)을 提示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日本 國公立大學 改善要項은 2卷을 私立大學 改善要項은 最低基準冊數에 대하여 1,000名까지 年 5%, 1,000名 以上은 3~4%로 1人當 2.5卷과 1.2~1.6卷을 제시하고 있으며 筆者에 의한 基準은 1教科科目當 綜合大學 1.44種, 單科大學 2.77種 以上, 學生 1人當 1.4卷 以上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이들 基準들도 上記한 바와같이 各國마다 약간의 相異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지만 아무튼 이들을 上記한 最低量 基準과 關聯지워 살펴보면 研究活動支援을 위한 年次增加量 範圍는 대체로 學生 1人當 4~5卷, minimal collection에 대한 基準은 1.4~2卷 程度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大部分의 基準들이 年次增加量 基準에 대하여 普及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學問은 停止된 狀態에 있지 않고 動的인 狀態속에서 成長해 가고 있으며 學術文化의 變動, 새로운 學說의 發見과 舊學說의 道대들은 언제나 새로운 資料를 要請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속에서 오직 限定된 目標量에 到達되었다는 安逸한 생각으로 繼續的인 資料供給을 等閑視 한다면 어떠한 結果가 올 것이라는 것은 自明한 事實일 것이다. 더욱 資料의 價値는 永久不變性이 아니라 可變的인 性質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착실성 있는 藏書의 增加는 어떠한 훌륭한 圖書館에도 필수적인 일”⁽⁶⁶⁾ 일 것이다. 따라서 最低藏書量을 갖춘 후 大學圖書館이 研究圖書館으로서 本然의 面貌를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資料의 嶄新性을 維持하고 研究의 幅을 넓혀 나가기 위한 年次增加量의 基準을 明文化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豫算基準의 範圍

이 基準도 年次增加量 基準과 마찬가지로 15個 基準中 7個 基準만이 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現況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ALA는 學生 1人當 圖書費로 11.4弗을 제시하고 있으며 ACRL은 學校 總豫算額의 5%를 圖書館豫算額으로 策定하고 그중 圖書費로는 人件費, 作業費의 $\frac{1}{2}$ 을 제시하고 있다. 이 基準을 Downs와 Heussman에 의하여 調査된 50個 大學 現況에 나타난 人件費와 一般經費의 百分率을 가지고 대략 算出해 보면 人件費가 60%, 一般經費가 6%이기 때문에⁽⁶⁷⁾ 총 66% 中 33%가 圖書費에 解當되어 結局 學校 總豫算額의 약 1.7

(66) ACRL, Standards Committee, 前掲書, p. 26.

(67) Watkins, 前掲書, p. 196.

%가 圖書費로 割當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Downs와 Heussman에 의한 基準도 이와 같이 圖書館豫算額은 學校 總豫算額의 5%로 하고 이중 純圖書費는 學生 1人當 50弗로 圖書館豫算額의 34%를 차지하여야 한다 하여 學校 總豫算額의 1.7%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Massman과 Patterson은 이를 教科課程과 書籍出版狀況에 根據하여 總60個 主題를 調査한 結果 26,178.63弗이 소요된다. 하여 1主題當 436弗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比하여 英國의 基準들을 보면 英國圖書館協會 工科大學 및 高等教育課 基準은 學校 總豫算額의 4%가 圖書館豫算額으로 配定되어 圖書와 定期刊行物費는 대체로 學校 總豫算額의 2% 程度를 나타내고 있으며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 基準은 이보다 높게 學校 總豫算額의 6%를 配定하고 圖書 및 定期刊行物費와 製本費는 圖書館 豫算額의 50%를 策定하였다. 그러나 이중에는 製本費도 包含하고 있으므로 보통 圖書館豫算에서 製本費로 策定하고 있는 10~20%⁽⁶⁸⁾와 定期刊行物費를 除한다면 대체로 學校 總豫算額의 1.5~2% 程度가 純圖書費로 策定된 셈이라 보겠다. 이에 반하여 筆者의 基準은 圖書費만도 學校 總豫算額의 3.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外國圖書가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換率關係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學校 總豫算額의 79.61%가 學生 納入金에 의하여 充當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⁶⁹⁾ 美國과 英國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이들 基準들을 綜合해 보면, ALA와 Massman과 Patterson에 의한 기준은 物價變動을 고려하지 않은 基準이기 때문에 除外하고 그 範圍를 살피 볼때 英國과 美國에서는 대체로 學校 總豫算額의 1.5~2% 程度가 年間 圖書費로 策定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添言하고 싶은 것은 年次增加量과 마찬가지로 大部分이 基準을 設定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Lyle은 大學圖書館 藏書構成을 위한 4原則의 하나로 “要求되는 新刊圖書 및 定期刊行物 購入을 위한 充分한 豫算”을 들고 있고,⁽⁷⁰⁾ Voigt는 藏書構成에 있어 豫算의 限界……를 決定하는 問題는 가장 重要한 要素”라 하고⁽⁷¹⁾ 있다. 이처럼 豫算基準의 設定이란 量的 增加나 質的 向上을 위한 重要한 基本要素라 하겠다. 따라서 보다 質的인 藏書構成을 하기 위하여는 上記의 基準를 처럼 要素分析으로부터 模型化해 놓은 豫算基準도 그들 속에 明文化시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68) 河野德吉 等編, 專門圖書館のための資料の整理と運用(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7), p. 230.

(69) 전국 고등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종합편 (서울: 한국산업기술개발본부, 1967), p. 151.

(70) Guy R. Lyle, The President, the Professor, and the College Library(New York: Wilson, 1963), p. 50.

(71) Melvin J. Voigt, Advances in Librarianship, v.1 (New York: Academic Press, 1970), p. 117.

IV. 結 論

大學圖書館의 存在의 意義는 大學教育의 目的을 圓滿히 遂行시켜 나갈 수 있도록 教授와 學習, 研究와 調査問에 圖書館資料를 통한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주는 데 있다 할 것이다. 藏書構成基準設定의 意義도 곧 그러한 目的遂行을 위하여, 즉 學生들의 教授—學習과 大學院生, 研究員, 教授들의 積極的인 研究活動 補助를 위하여 最小限의 範圍를 決定함에 있어 比較의 尺度로 삼아 基準에 未達된 大學의 경우 企劃과 豫算과 調整에 關係하고 있는 當局者들로 하여금 効率的인 大學教育計劃을 樹立할 수 있도록 價値指標로 提示하고자 한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大學教育에 있어 重要한 價値指標라 할 수 있는 各國의 藏書構成基準은 그 現況을 比較해 본 結果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本論에서 이미 言及한 바처럼 各國에서 提示하고 있는 基準들을 보면 各國마다 相異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一目瞭然하게 이를 살피 結論을 맺기란 容易하지 않은 實情이다. 따라서 各國의 基準들의 比較結果를 綜合하여 共通分母를 찾아 段階別에 의한 包括的인 範圍를 模型化함과 아울러 設定된 基準에 대한 느낌점 몇 가지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5個國 15個 基準을 對象으로 調査 比較해 본 結果,

(1) 最低藏書量의 範圍는 Danton의 5段階理論에 따라 區分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1段階인 minimal collection을 위한 基準은 대체로 新設綜合大學의 경우 100,000卷 内外로 學生 1人當 20~30卷 程度, 單科大學은 40,000卷 内外로 40卷 程度로 ALA의 奉仕負擔率에 의한 基準, Downs와 Heussman에 의한 基準, Massman과 Patterson에 의한 基準을 除外한 12個 基準이 이에 解當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第2段階인 working collection을 위한 基準은 綜合大學의 경우 學生 1人當 70~80卷, 單科大學의 경우 50~60卷 程度로 캐나다 基準, ALA의 奉仕負擔率에 의한 基準, ACRL基準, 英國圖書館協會의 師範大學基準이 이 段階의 基準을 提示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第3段階인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을 위한 基準은 學生 1人當 最低 100卷 以上으로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 基準과 美國의 Downs와 Heussman에 의한 基準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年次增加量 範圍는 15個 基準中 6個 基準만이 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積極的인 研究活動까지의 支援을 위한 基準은 學生 1人當 4~5卷으로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 基準, Downs와 Heussman에 의한 基準을 들 수 있으며 minimal collection을 위한 基準으로는 1.4~2卷 程度로 日本國·公立 및 私立大學 改善要項과 筆者의 基準을 들 수 있다.

(3) 豫算基準의 範圍는 15個 基準中 7個 基準만이 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物價變動을 고려하지 않은 ALA 基準과 Massman과 Patterson에 의한 基準을 除外하고 5個 基準을 2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美國과 英國에서는 學校 總豫算額의 1.5~2% 程度를 年間圖書費로 策定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基準으로는 ACRL, Downs와 Heussman, 英國圖書館協會 工科大學 및 高等教育課, 英國의 國家 및 大學校圖書館 常任會議 基準을 들 수 있다. 한편 筆者에 의한 基準은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藏書構成에 미치는 여러가지 內外的 要因의 分析에 따라 算出해 본 結果 學校 總豫算額의 3.5% 程度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解釋과 더불어 여기서 한가지 添言하고 싶은 것은 이미 本論에서도 지적한 바처럼 첫째, 이들 基準들의 一部를 보면 研究圖書館을 위한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研究主題分野의 多樣성과 이에 要求되는 研究資料의 無限性和 多樣性 때문에 그 限界를 決定하기란 事實上 어려우며 더욱 이들이 最低基準으로 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行政當局者나 調整當局이 이를 最大基準처럼 고려하여 계속적인 資料供給을 통한 우려성도 많기 때문에 再考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거의 大部分의 基準들이 年次增加量과 豫算基準을 設定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資料란 永久不變性이 아니라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利用價値의 수명이 減退現象을 나타내기 때문에 資料의 刷新性을 維持하고 研究의 幅을 계속적으로 넓히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이미 지적된 바처럼 이들 兩基準을 明文化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이미 本誌적인 研究活動展開를 위한 基準의 設定보다는 오히려 이들 基準의 設定이 어떤 面에서는 보다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 Comparison of Standards for Building a Library Collec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5 Countries

Sohn Jung-Pyo*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making a model of building a library collection demanded on the curriculum through the inter-comparison of 15 standard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5 countries (U.S.A., Great Britain, Canada, Japan, and Korea)

The result of these comparisons is as follow.

(1) Quantitative scope of the collection:

- ① Standards for a minimal collection are presented to about 100,000 vols (20~30 vols per student) for a new university and about 40,000 vols (40 vols per student) for a new college.
- ② Standards for a working collection are presented to 70~80 vols per student for a university and 50~60 vols per student for a college.
- ③ Standard for an intensive research collection is presented to more than 100 vols per student.

(2) Scope of the annual increase of the collection:

- ① Standard for a minimal collection is presented to 1.4~2 vols per student.
- ② Standard for an intensive research or working collection is presented to 4~5 vols per student.

(3) Scope of the annual budgetary standards:

- ① In Great Britain and U.S.A., there are assigned to 1.5~2%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expenditure for books.
- ② In our country, it is presented to 3.5% of the college and university expenditure for books, when my calculating by the various factor analysis.

* Library Science Dept., Kyungpook University